

2021년 서울관광재단 비공개 세부 기준

연번	작성단위(본부)	작성단위(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법령	비공개외의 구체적 사유
1	부서공통	부서공통	재단이 거래하는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	재산 종류·수량·금액 및 증명서,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예산서, 산출내역서, 정산내역서, 신용조회결과, 임직원 명부	제7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부서공통	공인(공공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에 관한 정보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공업무와 무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3		부서공통	공인(공공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에 관한 정보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병역기록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공업무와 무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부서공통	일반 시민에 관한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5		부서공통	입찰계약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제5호	공개 시 평가위원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6		부서공통	입찰계약	위원별 제안서평가 점수 및 평가 내용 ※ 개별 위원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낙찰공고 후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		부서공통	입찰계약	입찰제안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입찰 서류 일체	제7호	영업 노하우와 전략, 제안의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8		부서공통	홈페이지	로그파일, IP 대역,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제3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9		감사관	감사관	감사	불시 지도점검계획	제5호
10	감사관		감사	감사(지도) 업무 개선안	제5호	공개 시 향후 유사한 유형의 감사(지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11	감사관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내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12	감사관		내외부 민원	내부 직원 고충처리 시 관련 직원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성명, 소속, 직위 등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13	감사관		내외부 민원	내부 직원 고충처리 내용	제5호	고충처리의 내용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인 경우 공개할 시 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제6호	진술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익명처리 시에도 해당 직원을 유추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14	감사관	내외부 민원	민원인 이름, 주민번호 등 민원 처리 시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개 시 민원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및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5	기획예산팀	예산	예산 확정 전 예산안 ※ 예산(안) 승인 후 홈페이지 공개	제5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16		기관 운영계획	확정 전 연도별 업무계획 ※ 확정 후 홈페이지 공개	제5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연번	작성단위(본부)	작성단위(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법령	비공개외의 구체적 사유
17	기획경영본부	기획예산팀	내외부 평가	경영평가 추진 계획, 경영실적보고서 등 ※ 경영평가 결과 통보 수신 후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공개	제5호	평가 계획 및 내용 등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공개 시 공정한 평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8		기획예산팀	내외부 평가	내부 부서평가 결과 ※ 해당 부서장 및 부서원 대상으로만 공개	제6호	개인 성과평가에 포함되는 자료로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 직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19		기획예산팀	이사회 등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등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제6호	발언자 성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20		인재경영팀	인사	인력운영, 승진 등 인사 계획	제5호	확정 전 공개 시 청탁 등으로 인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1		인재경영팀	인사	인사 관련 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사 관련 회의록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22		인재경영팀	인사	인사 관련 위원회 명단	제6호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23		인재경영팀	인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개인 휴대전화 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등 인사관리카드 내 직원 인적사항 및 개인식별정보 ※ 고용형태 무관	제6호	직무 및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24		인재경영팀	복무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휴직 사용 및 휴가지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제6호	직무 및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25		인재경영팀	채용	채용 공고 전 신입직원 채용 실시 계획	제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 초래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6		인재경영팀	채용	본인 외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및 신체검사 결과 ※ 응시자 본인 성적은 공개 가능	제6호	타인의 채점표, 신체검사 결과 등은 개인에 대한 평가결과로서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음
27		인재경영팀	내부평가	내부 개인평가 기록 ※ 직원 본인에게만 공개	제6호	직무와 상관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28		경영지원팀	회계-자금	확정 전 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 후 공개	제5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29		경영지원팀	회계-자금	재단 법인 계좌번호, 법인카드 번호	제7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30		경영지원팀	계약	입찰 제안서 및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서류	제6호	계약체결 서류 내에는 제안사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제7호	사업 계획 및 재무 자료 등에는 영업 노하우와 전략, 제안의 창의성이 내포되어 있어 법인의 경영·영업 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31		경영지원팀	정보보안	내부 그룹웨어 시스템 로그파일, 보안 솔루션, IP 대역	제3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32		경영지원팀	공인관리	법인인감, 사용인감, 직인 전자 이미지	제3호	공개 시 위변조 및 범죄에 악용 우려가 있음
					제7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경영정보에 해당함
33		시민소통팀	홈페이지	재단 대표 홈페이지 및 CMS 로그파일, IP 대역,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제3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연번	작성단위(본부)	작성단위(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법령	비공개외의 구체적 사유	
34		관광플라자팀	시설 운영·관리	서울관광플라자 입차 계약 정보	제7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어 상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35		관광플라자팀	시설 운영·관리	서울관광플라자 도면 중 보안시설(기계실, 보안실 등), CCTV 위치 및 장비종류	제3호	공개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시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36		관광플라자팀	시설 운영·관리	서울관광플라자 시설 대관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사용목적, 사용내역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37		관광플라자팀	시설 운영·관리	서울관광플라자 시설 대관 관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법인/개인) 개별 내역	제7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어 상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38		관광플라자팀	시설 운영·관리	서울관광플라자 투어 예약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투어 일정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39		관광플라자팀	플라자 입주사 관리	입주신청 시의 제출 서류 일체 ※ 입주 여부 무관	제7호	제출한 영업매출, 재무제표, 투자유치내역 등의 증빙자료 및 제출 서류는 지원 자격 및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각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함	
40		관광플라자팀	플라자 입주사 관리	입주사 임직원 명부	제6호	입주사 임직원 명부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	
41		관광플라자팀	플라자 입주사 관리	입주기간, 기업별 입주비용	제7호	이외의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어 상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42		국제관광-MICE본부	글로벌마케팅팀	서울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43			글로벌마케팅팀	해외 핵심여행사	지원 여행사명, 지원 기간, 지원 내역	제7호	업체별 지원금액, 기간 등은 각 업체의 수익 정보로서 공개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어 상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44			스마트관광팀	스타트업 육성·지원	지원신청 시의 제출 서류 일체 ※ 지원선정 여부 무관	제7호	제출한 영업매출, 재무제표, 투자유치내역 등의 증빙자료 및 제출 서류는 지원 자격 및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각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함
45	스마트관광팀		스타트업 육성·지원	지원 스타트업 기업명, 임직원 명부, 입주기간, 기업별 입주비용	제7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어 상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46	스마트관광팀		관광시민정보 제공	VisitSeoul.net 로그파일, IP 대역,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제3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47	MICE기획팀		MICE 민관협력	서울MICE얼라이언스(SMA) 회원사 별 지원내역	제7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어 상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48	MICE기획팀		MICE 민관협력	서울MICE홈페이지 및 종합지원시스템 로그파일, IP 대역,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제3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49	MICE지원팀		글로벌전문가 양성	MICE서포터즈, 홍보단, 인재뱅크 등 지원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개인 식별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50	시민관광팀		유니버설관광환경 조성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시설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용내역 및 예약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51	시민관광팀		유니버설관광환경 조성	서울다누림관광 홈페이지의 로그파일, IP 대역,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제3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52	시민관광팀		시민관광 아카데미	아카데미 프로그램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청 내역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53	관광콘텐츠팀	서울로7017 여행사터미널	센터 프로그램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청 내역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54	관광안내팀	종합관광정보센터	센터 이벤트 참여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참여 내역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연번	작성단위(본부)	작성단위(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법령	비공개외의 구체적 사유
55		관광안내팀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온·오프라인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참여 내역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56		산업협력팀	의료관광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용서비스, 상담내용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57		산업협력팀	회복도약 자금지원	자금지원 신청 업체의 제출 서류 일체	제7호	제출한 영업매출, 재무제표 등의 증빙자료 및 제출 서류는 지원 자격 및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각 업체의 경영·영업 상의 비밀에 해당함
58		산업협력팀	회복도약 자금지원	선정 업체별 지원금액, 계좌정보, 정산서	제7호	업체별 지원금액은 각 업체의 수익 정보이며, 계좌정보와 정산서는 경영·영업 상의 비밀에 해당함
59		관광서비스팀	디스커버서울패스	각 제휴 시설 및 판매처별 패스 판매대금, 정산내역	제7호	정산내역 내 판매처 수수료, 제작 단가 등이 포함되어 각 제휴시설의 수익정보 및 경영·영업 상의 비밀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60		관광서비스팀	디스커버서울패스	정산 시스템 및 홈페이지, 어플의 로그 파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제3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61		관광서비스팀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서울도보해설관광 프로그램 이용자 해설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해설사), 참여내역 등 개인식별 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62		R&D팀	연구용역 (실태조사 포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응답자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정보	제1호 제6호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위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공개요청 시 사안별로 판단하여 공익 목적 등을 위하여 공개가 가능함

※ 제5호에 의하여 의사결정 중의 사항으로서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종료 시 공개 가능함